전자출입명부(KI-Pass) 안내

- 지자체용 -



2020. 8.



Contents

I 전자출입명부(KI-Pass) 개요		1
■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활용		9
1. 이용자 이용 절차(네이버, PASS, 카카오톡)		. 9
① 네이버		9
② PASS		13
③ 카카오톡		15
2. 시설관리자 이용 절차	••••••	19
■ 주요 질의 응답(Q&A)		28
1. 일반사항	•••••	28
2. 이용자		35
3. 시설관리자		39
4. 지자체 담당자		48
▼ 전자출입명부 관리시스템(지자체)		51
V 홍보자료		58

전자출입명부(KI-Pass) 개요

1. 전자출입명부(KI-Pass)란?
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산의 방지 및 방역조치를 위해 그간 수기 (手記)로 작성되어오던 업소 등 출입자 명부를 개선
 - 정보기술(IT)을 활용, QR코드에 기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개발· 배포하『전자출입명부』시스템을 지칭함

2. 도입 배경

-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, 집단감염 위험시설(유흥시설 등)의 출입자 명부가 허위 작성되는 등 방역망의 미비점 발견
 - * 「감염병예방법」상 '집합제한명령'으로서 유흥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등 준수사항 이행을 명령 ('20.3.22)
 - **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명부 상 인원 4,961명 중 41.0% (2,032명)만 유선 통화 가능
 - 허위기재 및 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수기 기재 방식을 개선, QR코드 등_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방문자 정보관리 필요
- 불특정 다수 이용 시설의 이용자 특정, 연락처 확보, 감염 차단을 위해 IT기술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('20.6.10~)

3. 법적 근거

• 전자출입명부 동의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3자 제공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15조 및 제17조,「위치정보보호법」제15조에 근거함



T 전자출입명부(KI-Pass) 개요

-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제1항제1호, 제17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,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고, 제3자에게 제공(공유 포함)할 수 있음
- 「위치정보보호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개인 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 · 이용 제공하여서는 아니됨
- 보건복지부장관은 「감염병예방법」 제76조의2제1항에 근거하여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출입명부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
 - 「감염병예방법」 제76조의2제1항 근거하여,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 본부장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보제공요청이 가능하며 요청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함
 -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'20.5.8. 시행한 집합제한명령에 따라, 유흥시설 등은 출입자 명단을 작성 · 관리할 의무가 있고, 그 의무 이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작성 제도가 도입됨

4. 사용 절차



- ① (이용자) 시설 이용시 QR코드발급회사(네이버, 카카오톡, PASS)를 통해 QR코드 발급 ➡ 발급받은 개인별 QR코드를 시설관리자에게 휴대폰으로 제시
 - * QR코드발급 관련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, 대중성이 높은 네이버 (6.10.~), PASS(6.24.~), 카카오톡(7.1.~)에서 발급 가능
- ② (시설관리자)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(관리자, 시설명, 사업자 등록번호 등 정보 입력 후 인증)하고, 앱을 통해 이용자의 QR코드를 스캔하여 방문 기록*을 생성
 - * 특정 QR코드를 시설관리자용 앱으로 인식한 시간과 시설명만 기록되고, QR코드가 어떤 이용자의 것인지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인식 불가
- ③ (QR코드발급회사) 기존 앱(네이버, 카카오톡, PASS)에 QR코드 생성 기능 추가* → 앱에서 생성된 개인 QR코드 정보를 서버 내 저장·관리
 - * 상용 앱 운용회사에 대해 복지부 인증을 거쳐 기존 앱 내에 QR코드 생성 기능 탑재할 수 있도록 하여, 별도 개인정보 입력 없이 간단한 동의 절차만으로 기능 활용 가능
- ④ (한국사회보장정보원) 시설관리자용 앱을 통해 수집된 시설정보 및 이용자의 방문 정보*(QR코드 인식 기록)를 서버 내 저장·관리 *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보유하지 않음
- (방역당국) 확진자 발생 시,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은 QR코드발급회사에 개인정보(이름, 전화번호, QR코드),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방문정보(시설정보, 방문시각, QR코드)를 각각 요청
 - 제공받은 정보를 결합하여 접촉자 추적 등 신속한 방역조치에 활용
 - * (활용 예시) 방문 기록(A시설에서 22시에 인식된 QR코드 정보) + 개인정보(QR코드별 이름, 연락처 등 정보) ⇒ A시설에 22시 방문한 사람의 이름, 연락처 등 정보를 통하여 접촉자 명단 파악 가능

T 전자출입명부(KI-Pass) 개요

※ [참고] 전자출입명부 관련 개인정보 보호조치

- (개인정보 관리) ①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*만 암호화 · 수집
 →②분산 보관 · 관리 → ③4주 후 자동 파기로 우려 최소화
- * (QR코드발급회사) 이름, 연락처, 발급 시각, QR코드 등의 정보 (한국사회보장정보원) 시설 정보, 방문 시각, QR코드 등의 정보
- (정보보관) 평상시에는 '개인정보'는 QR코드 발급회사에서, '방문정보'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암호화하여 분산 보관 → 확진자 발생 등 필요시에만 결합
- (**파기**) 코로나19 잠복기(14일)의 최대 2배인 4주 이후 자동 파기

5. 적용 대상 시설 및 적용 기간

- 의무적용시설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(이하 '중수본')에서 고위험시설 지정, 집합제한 조치 등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토록 한 시설

구분	시설 유형	의무적용시설	계도기간		
고위험 시설 (13종)	음식점	헌팅포차, 감성주점			
	유흥시설	유흥주점(클럽, 룸살롱 등), 단란주점, 콜라텍			
	여가시설	노래연습장	6.10.~6.30. (종료)		
	체육시설	실내집단운동(격렬한GX류) * GX(Group Exercise) : 줌바, 태보, 스피닝 등			
	공연시설	실내 스탠딩공연장(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)			
	사업장	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(방문판매, 다단계판매, 후원방문업체), 유통 물류센터	6.15.~7.5. (종료)		
	교육시설	대형학원(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)			
	음식점	뷔페(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한정)			
	PC방	PC방	8.19.~9.9.		
수도권 (서울, 인천, 경기)	위험도 높은 이용시설 12종	학원, 오락실,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(예:150㎡ 이상),, 워터파크, 종교시설, 실내 결혼식장, 공연장, 영화관, 목욕탕·사우나, 실내 체육시설, 멀티방·DVD방, 장례식장	8.19.~9.9.		

- * '20.8.19.일자 기준이며, 이후 의무적용시설은 추가 또는 삭제될 수 있음 **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
- 지자체에서 집합제한 명령 또는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토록 한 시설 (일회성 행사도 가능함)

※ 적용 예외 : ① 또는 ②

- ① 자체적으로 전자출입시스템을 구축·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
 - * 본인인증(성명, 생년월일, 본인명의 휴대폰 연락처) 등을 통해 개개인을 식별 가능한 시스템에 한정하며, 동시에 확진자 발생시 방역당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주간의 출입기록(출입 일시, 성명, 연락처)이 즉시 제출 가능한 시스템
- ② 통신 곤란한 시설의 경우 등* 지자체장이 특별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
 - * (예시) 정기적인 출입기간 및 출입자가 특정되어 있고 방역 관리가 철저하다고 지자체에서 판단할 경우 등
- 임의적용시설: 시설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앱 설치·회원가입 후 사용 가능
- 적용 기간: 감염병 위기 경보 '심각', '경계' 단계까지 한시적 운영
 - * 감염병 위기단계 총 4단계(관심-주의-경계-심각)
-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사용에 대한 책임은 그 시설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에게 있음

6. 수기명부 비치 및 관리

- 의무적용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, **수기명부 비치 및** 관리*(신분증 대조 필수)
 - 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사용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,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
- 작성 시 타인의 개인정보는 볼 수 없도록 하고, 수기명부는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 보관
- 4주 경과 시 반드시 파쇄 또는 안전한 장소에서 소각

※ 수기명부 부실 관리 시 주요 처벌 규정

- 수기명부 4주 보관 후 폐기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, 집합 제한 조치 위반으로 300만원이하의 벌금 (「감염병예방법」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)
- 4주 보관 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(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73조제2호)
-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

전자출입명부(KI-Pass) 개요

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에 벌금(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71조제6호)등

• 질병관리본부나 지자체에서 역학조사 용도로 요구 시에만 제공, 그 외 목적으로 이용·제공 금지

7. 의무적용시설 중 미설치·미사용시설에 대한 조치 절차(7.1~)

- 의무적용시설 중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경우. 집합 제한명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
- (중대본) 고위험시설 등 집합제한 조치 시설들이 불가피하게 운영 시 핵심 방역수칙(QR코드설치) 철저 준수 조치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제한 조치)
- (2) (지자체)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, 집합제한 조치준수 여부 현장점검(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),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고위험시설에서 제외
- ③ (지자체) 집합제한 조치 미준수 시설에 지자체장이 집회·집합금지 행정조치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회·집합금지명령)
- ④ (지자체) 집회·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,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
 - * 다만,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
 - 「감염병예방법」제49조제1항, 제2의2호 및 제83조제2항 및 제4항제1호에 근거하여,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영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으며, 이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(관리자·운영자) 또는 10만원이하(이용자)의 과태료를 부과함
- ※ 현실적으로 의무적용시설 여부는 각 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개별 지정·통보로 결정되므로 의무적용시설에 정확히 지정·통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

[양식1] 수기명부

□ (개인정보 수집·제공 동의문) 시설관리자가 작성하여, 이용자에게 안내

개인정보 수집 이용, 제공 동의서

<u>(시설명)</u> 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·제3자 제공합니다.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.

□ 개인정보 수집·이용

항 목	수집목적	보유기간
방문날짜, 방문시각, 이름, 전화번호	감염병 예방 및 전파의 차단 및 역학조사	4주
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설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.

□ 개인정보 제3자 제공

제공받는 기관	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		보유기간	
질병관리본부	감염병 예방 및 전파의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	방문날짜, 방문시각, 이름, 전화번호	역학조사 종료 후 파기	

- **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당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.
- ※ 만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별도로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.
- □ 시설관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
- 이용자의 이름, 전화번호 등 수기명부에 작성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은 시설관리자 본인에게 있으며, 시설관리자는 평상시 별도 보관, 4주 후 파기 등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.



□ (수기명부 양식) <u>이용자는 아래 양식만 작성</u>

* 신분증 대조 필수(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별도 동의 필요)

날짜	방문 시각	개인정보 수집· 이용 동의	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	이름 (서명 대체)	전화번호	비고
6.24	17:24	√	√	홍길동		

이용자 이용 절차

- □ 본인의 스마트폰에서 다음 세 가지 ① 네이버 모바일 앱, ② PASS(통신사 본인인증 앱), ③ 카카오톡, 중 원하는 앱을 통해 QR코드 발급
 - ① QR코드 발급방법 _ 네이버 모바일 앱

[가. QR코드발행 진입 경로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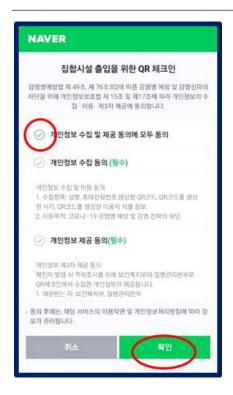
- ① 네이버 앱(또는 홈페이지) 메인에서 오른쪽 종 모양 아이콘을 선택
- * 네이버 앱을 업데이트 해야, ② 이 보이게 되니 업데이트 요망



② QR코드체크인 선택 (사전 로그인 필요)



전자출입명부 시스템 활용



③ "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"를 읽고, 동의할 경우 동의 및 확인 선택



④-1 휴대전화 SMS 인증창이 나오면, 휴대폰 번호를 통한 인증을 진행 (최초 1회, PASS 혹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도 가능함)



[사용자가 만 14세 미만의 경우]

④-2 별도 보호자 동의가 필수(최초 1회만 동의)



⑤-1 전자출입명부 QR코드발행 완료



[QR코드 코드는 1회용으로,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5초만 유효하며, 해당 시간을 넘어서면 좌측 QR코드 유효시간 초과 안내 화면이 나옴] (2회까지 자동 재생성)

⑤-2 **재시도** 버튼을 누르면,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바로 QR코드 재생성



[나. 최초 QR코드 발행(동의) 이후 QR코드 발급 절차]



※ 쉬운 방법 알아보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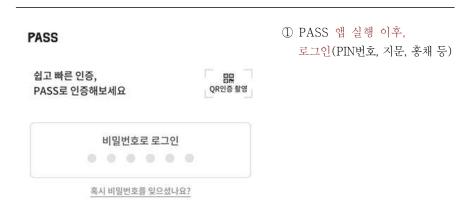
네이버에서 "전자출입명부"를 검색(스마트폰에서만 가능)

- ① "내 QR코드 발급하기": 바로 QR코드 발급화면으로 이동
- ② "전자출입명부(KI-Pass)란?": 안내 페이지 이동

(포스터, 리플렛 다운로드 가능)

- 2 QR코드 발급방법 _ PASS 앱(통신사 본인 확인 앱)
 - ※ 통신사(SKT, KT, LG)에 따라 화면이 일부 다를 수 있음

[가. QR코드발행 진입 경로]





② QR출입증 선택 (사전 로그인 필요)



전자출입명부 시스템 활용

해당 시설을 출입하기 위해 OR출입증 인증이 필요합니다.

약관 등의 후 QR생성을 누르세요. (*QR출입증은 강영병여방법 제49조, 제 76조의2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.)



③ "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"를 읽고, 동의할 경우 동의 후 QR생성 선택





[QR코드 코드는 1회용으로, 오남용을 방지 하기 위해 15초만 유효하며, 해당 시간을 넘어서면 동 화면이 나옴]

④-2 재생성 또는 새로고침 버튼을 누르면,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바로 QR코드 재생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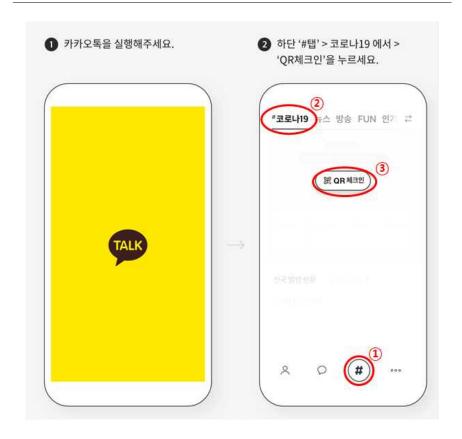
15초 남음

출입하려는 시설의 담당자에게 위의 QR코드를 보여주세요,

C QR코드 재생성

③ QR코드 발급방법 _ 카카오톡

[가. QR코드발행 진입 경로]



카카오톡 앱을 실행한 후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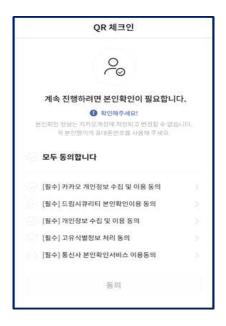
- ① 하단의 왼쪽 세 번째 버튼인 '#탭' 선택
- ② 상단의 왼쪽 첫 번째 버튼인 '코로나19' 선택
- ③ 화면 중간의 'QR코드체크인' 선택



전자출입명부 시스템 활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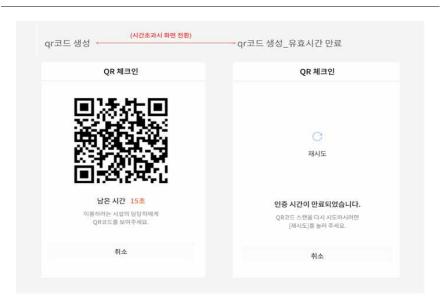
④ "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"를 읽고, 동의할 경우 동의 선택



⑤-1 본인인증 또는 전화번호 인증을 진행 (최초 1회)



⑤-2 필요 정보 입력 후 인증



- ⑥-1 전자출입명부 QR코드발행 완료
 - [QR코드 코드는 1회용으로,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5초만 유효하며, 해당 시간을 넘어서면 QR코드 유효시간 초과 안내 화면이 나옴], 최초 3회까지 자동 재생성
- ⑥-2 재시도 버튼을 누르면,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바로 QR코드 재생성



■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활용

□ 시설 출입 시, 다음과 같이 QR코드 생성(이용자) 및 스캔(시설관리자)





□ 정상 인증 시, "인증되었습니다."라는 음성메시지 송출 및 문구가 화면에 표출됨

시설관리자 이용 절차

가. 준비사항

- (필수) LTE, WiFi 등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단말기(휴대폰* 혹은 태블릿PC**), 휴대폰 충전기(혹은 태블릿PC 충전기), 대표자(혹은 방역관리자) 본인 명의 휴대폰, 사업자등록증***
 - * 대규모 인원이 입장하는 시설의 경우, 스캐너가 내장된 PDA 형태(안드로이드 운영체계)의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음
 - ** 컴퓨터(PC)로는 사용 불가함
 - **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시설도 '사업자등록증 없음'을 체크한 후 등록 가능
 - (선택) 거치대*(휴대폰 혹은 태블릿 PC용)
 - * 시설 입장 손님이 직접 QR코드 코드를 인식시킬 수 있도록, QR코드인식용 휴대폰(혹은 태블릿 PC)을 거치할 수 있는 스탠드(아래 그림 참조)







Ⅱ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활용

- (미지원 장비) Windows 기반 POS 또는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'거치형 2D 레이저 스캐너(QR코드인식 가능)'는 **사용 불가**



나. 필수 환경

- (네트워크 연결 필수) 본 전자출입명부 앱은 QR코드 인식 기능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시스템 서버와 상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야 함
 - (핫스팟 기능 활용 가능) 시설 외부에서 입장 관리를 수행하는 관계로 WiFi 연결이 불가능할 경우, 방역관리자 혹은 직원 휴대폰의 핫스팟 기능을 동작하여 QR코드인식용 단말기가 네트워크와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음

다.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 절차

• 삼성폰 등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(Playstore), iPhone, iPad 등 iOS 사용자는 앱스토어(Appstore)에서 '전자출입명부' 앱을 찾아 기기(안드로이드 4.1 이상 혹은 iOS 11 이상)에 설치하여야 함



① 구글 플레이스토어(안드로이드 사용자) 또는 애플 앱스토어(iOS 사용자)에서 '전자출입명부'앱 설치



② 사업자 신규 등록 버튼 선택



전자출입명부 시스템 활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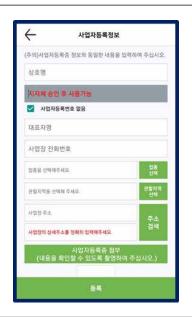
③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·제공 동의를 읽고 동의 (각 동의에서 '전체보기'를 할 경우, 전체 내용이 화면에 표시)



④-1 (사업자등록번호 있는 경우)

상호명, 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자명, 사업장 전화번호, 업종, 관할 지역, 사업장 주소 등을 정확히 입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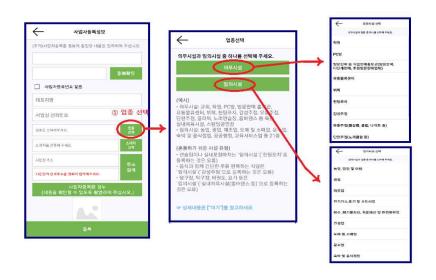
(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명을 가진 사업장이 여러 개 있을 경우(지점 등), 각각의 시설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명을 중복 하여 등록 가능하며, 이 경우 로그인시 화면에 '중복사업자 _건'이라고 뜸)



④-2 (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)

'사업자등록번호 없음'을 체크하고, 다른 정보들은 모두 입력하여 가입 (단, 이 경우 지자체 시군구 담당자가 kipass.ssis.or.kr사이트에서 승인 처리 후 사용 가능)

- * 승인방법: 55쪽 참조
- ** 지자체에서 신속 승인 요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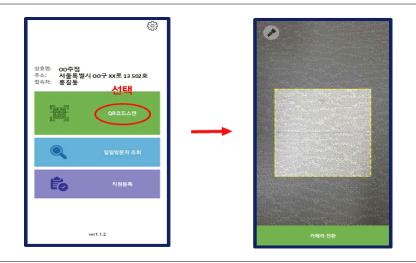
④-3 가입정보 중 업종은 필수 선택 (의무적용시설이 아닌 경우, "기타"를 선택하여 세부업종 선택)



Ⅱ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활용



- ④-4 (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번 중복하여 가입할 경우) 확인 창에서 "예(관리자 추가등록)"을 선택
- ⑤ 관리자의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통해 인증
- ⑥ 관리자가 사용할 아이디, 비밀번호 입력 후 등록



- ⑦ "QR코드 스캔"버튼 선택 시, 사용 가능
- * QR코드 인식창 크기는 사용 OS(안드로이드 또는 애플)에 따라 크기가 다를 수 있음

라. QR코드 스캔 직원 추가등록

- 각 시설의 대표자 등록(앱 설치, 본인인증 및 회원등록 완료)이 완료되었을 경우,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는 직원(또는 출입구에 설치된 단말기)을 추가 등록가능함(등록가능 직원수 제한 없음)
 - * 출입구가 여럿일 경우, 해당 출입구마다 단말기 설치(거치) 및 방문자가 스스로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를 권고함



- ① 메인페이지(로그인 후 첫 번째 화면)에서 "QR코드스캔할 직원 추가등록" 선택
- ② 직원등록 페이지가 열리며, 상단 오른쪽의 "직원추가" 아이콘 선택
- ③ 직원실명 및 아이디, 비밀번호를 입력 (직원 스스로 입력하게 하기보다는 대표자가 아이디를 순차적으로 지정하고,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방법 추천)
 - * 추가 단말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, 장소 별칭(00입구)으로 사용 가능
- ④ "등록" 버튼을 눌러 등록절차 완료



전자출입명부 시스템 활용

마. 사업자등록번호 중복 가입

- 사업자등록번호는 하나라도, 사업장 장소가 분리된 경우(출입 동선이 완전히 분리된 경우 등)에는, 각각 사업자(관리자)를 별도 등록하여 관리
 - *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번 가입 가능함
 - * 시설에서 중복가입 건을 삭제 요청할 경우 해당 시군구 담당자가 https://kipass.ssis.or.kr에서 삭제 가능



- ① 사업자등록번호 등 정보는 같은 정보를 입력
- ② 상세주소만 다르게 입력하여 새로 가입

바. 시설관리자용 앱을 활용한 입장 절차

- 스캔에 사용되는 휴대폰(혹은 태블릿)은 통화가 어려울 수 있고, 쉽게 방전될 수 있으므로, LTE, WiFi 등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단말기에 전원을 상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고함
- 휴대폰(혹은 태블릿)의 전면 카메라 혹은 후면 카메라를 활용할 수 있으며, 전면카메라 사용시 QR코드 코드는 약 30cm의 간격을 두어 스캔하여야 원활한 인식을 수행할 수 있음



- ① 로그인 완료 후 QR코드 스캔 버튼 선택
- ② 가운데 투명한 부분 내 ③ 줄 부분에 입장객 QR코드 스캔 [스캔이 완료될 경우, '인증되었습니다.' 음성메시지 송출]